###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88

발의연월일: 2022. 7. 11.

발 의 자: 강대식 · 김용판 · 김승수

엄태영 · 신원식 · 배준영

김선교 · 임병헌 · 홍문표

金炳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5.8% 상승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 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세 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400만원 이하			
5,400만원 초과	684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788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538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238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23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억8,23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		제55조(세율)	①
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u>과세표준</u>	<u>세율</u>	종합소득 <u>과세표준</u>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u>1,200만원 초과</u> <u>4,600만원 이하</u>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u>1,400만원 초과</u> <u>5,400만원 이하</u>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u>4,600만원 초과</u> <u>8,800만원 이하</u>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u>5400만원 초과</u> 1억원 이하	684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u>8,800만원 초과</u>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u>1,788만원 + (1억원을</u>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8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38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u>3억원 초과</u> <u>5억원 이하</u>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u>3억원 초과</u> 5억원 이하	9,238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u>5억원 초과</u>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u>5억원 초과</u> 10억원 이하	1억7,23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u>10억원 초과</u>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u>10억원 초과</u>	3억8,23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 같음)